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15 호 2020. 1. 23.(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6호[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7호[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8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92호[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01호[중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03호[장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0호[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21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16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번지 일원

3. 사업개요 : A=59,174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신명바다청소년야영장 대표이사 박만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번지

5. 사업기간

(당초) 2014. 8. 28. ~ 2019. 12. 31.

(변경) 2014. 8. 28. ~ 2020.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합계			100,900	59,174			
1	신명동 산30	산30	입	37,586	0	(주)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104-10	입	11,595	11,595		
2	신명동 104-7		입	35,511	35,511	(주)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3	신명동 104-4		입	8,022	8,022	(주)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4	신명동 104-2		답	260	260	김O이	남구 무거동 1261-2
5	신명동 산1-3		입	1,732	1,649	고O숙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
						박O면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
						박O진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
						윤O희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
6	신명동 산1-5 (104-11)		도	1,374	1,360	건설부	
7	신명동 산1-7 (104-12)		입	554	553	건설교통부	
8	신명동 산27-3		도	160	156	건설부	
9	신명동 산28-1		구	4,106	68	농림수산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7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구간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대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와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제1조(목적)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호계 구시가지 일원인 호계역에서 시장2리 사거리까지 호계 6길 33~36, 호계로 205~207번길, 호계2길 7, 호계로 209~250번길 구간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1. 지정구간

- 호계구시가지 일원 522m(호계역에서 시장2리 사거리까지)

2. 지정구간 도로명 주소 및 위치도 : 【붙임 1】 , 【붙임 2】

제4조(예산의 지원) 지정된 시범구역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벽면이용간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벽면이용간판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2. 의료시설·약국·이미용업소는 벽면이용간판 이외에 픽토그램형 돌출간판을 1개 추가할 수 있다.

②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에 있어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LED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신축건물은 외벽의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간판의 교체시 용이하도록 간판의 게시틀 설치를 권장한다.

④ 커튼 월 [Curtain Wall(비내력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문자,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 주변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의 크기·색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픽토그램의 표시를 권장한다.

⑦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⑧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입체형으로 5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층에는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 판에 입체형 문자로 표시 할 수 있다.

② 간판의 가로 크기는 당해 업소 전면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하고, 최대 10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범위 내에서 디자인된 베이스판은 최대 80cm 이내, 문자나 도형 등은 최대 6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위층과 아래층의 한 벽면에는 당해 업소의 광고물만 표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간판을 상·하로 연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⑤ 같은 층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 할 때는 다른 간판과 어울리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캐노피 포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하층을 위한 벽면 이용 간판은 2층 창문높이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돌출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소형돌출간판을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면적은 0.36㎡, 두께 0.2m 이내로 하되 픽토그램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동일 건물 내의 소형돌출간판의 규격은 동일하게 한다.

제8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인접한 도로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와 지하 또는 건물 구조상 다른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높이는 6m이내로 한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5층 이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 ② 건물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높이는 3m이내, 가로길이는 10m 이내로 글자크기는 높이 2m 이내로 한다.

제10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설치하는 가로쓰기로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로 안전띠 개념으로 한 줄로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20cm 이내로 한다.

③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하고,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서 광고물로 인지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④ 전광류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1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직접조명),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화면변환 형식의 광고물 표시는 금지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은 제외한다.

② 조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원에 커버를 씌워 반드시 내부조명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면 안된다.

제12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복합 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게시시설 포함)를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건물의 주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기둥에 설치한 것 포함), 애드벌룬, 벽보, 전단은 표시를 금지한다.

제15조(광고물심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 정비시범구역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과 맞지 않거나,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 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정비시범구역 내 신규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시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는 광고물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 등이 반드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세입자가 정비 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본 고시에 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1. 본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이 고품격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법, 영, 시 조례, 구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1】

□ 지정구간 도로명 주소

정비시범구역 (지번조서)

주소	도로명 주소
울산 북구 호계동 831-1	호계6길 33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8-4	호계6길 34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8-5	호계6길 35-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8-3	호계6길 36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7-5	호계로 205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7-7	호계로 207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70-3	호계2길 7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7-6	호계로 209-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7-11	호계로 209-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7-12	호계로 209-4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69-4	호계로 210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69-6	호계로 210-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3-1	호계로 21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3-6	호계로 213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6-2	호계로 213-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1-13	호계로 214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1-15	호계로 214-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6-1	호계로 215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3-1	호계로 216-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6-11	호계로 217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6-10	호계로 217-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5-6	호계로 218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5-5	호계로 218-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5-1	호계로 219-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7-6	호계로 220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4-1	호계로 22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7-7	호계로 22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3-4	호계로 223-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3-3	호계로 223-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8-1	호계로 224-2 (호계동)

정비시범구역 (지번조서)

주소	도로명 주소
울산 북구 호계동 936-51	호계로 225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2-10	호계로 226-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2-5	호계로 226-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49	호계로 227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2-9	호계로 228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2-3	호계로 228-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48	호계로 229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17	호계로 230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3	호계로 23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7	호계로 231-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75	호계로 23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2	호계로 232-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8	호계로 233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1	호계로 234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41	호계로 235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3-37	호계로 235-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0	호계로 236-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25-2	호계로 237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25-29	호계로 238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8-5	호계로 240-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24-7	호계로 240-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7-1	호계로 24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9-2	호계로 243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9-1	호계로 244-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9-5	호계로 244-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50-1	호계로 245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51-1	호계로 245-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9-1	호계로 246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52-1	호계로 248-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52-7	호계로 248-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54-7	호계로 250 (호계동)

【붙임 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매곡4로 9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06-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4 로 9	2020-01-23	호계·매곡지구명칭사 용을사용하여서도로명 을부여함.	2017-05-04
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매곡 지구 20B 1L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9길 21	2020-01-23	신기3길인근위치연계 성반영하여일련번호부 여	2018-05-10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 지구 37B 4,9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4길 45	2020-01-23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 하는친숙한이름이므로 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208-2	울산광역시 북구	덕곡길 94	2020-01-23	예전지명인덕곡명칭을 사용해서도로명을부여 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650-4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29-4	2020-01-23	동대마을명칭을사용해 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1-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업1 길 26	2020-01-23	중산 산업단지 내부도로라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5-02-02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동산길 29-4	상안동 650-4	2020. 1. 23.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92호

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보건소의 현재 행정직제에 따른 직무대리 규정 미비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현재 보건소 직제에 따라 직무대리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제2호)
 - 보건소장 사고 시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 하도록 규정 정비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201 팩스 : 052)241-7209】

5. 기타사항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보건소의 주무담당주사”을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 ② (생 략) 1. (생 략)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u>보건소의 주무담당주사</u>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 담당주사</u>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 5. 30.>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01호

중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 업 명 : 중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 업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710번지 일원(319필/160,729㎡)
3.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복구
5. 사 업 기 간 : 2020. 1월 ~ 2021. 12월
6. 사 업 예 산 : 77,138천원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조서 등
 -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52) 241-7584

나. 팩 스 : 052) 241-7569

다. 우 편 : (44248)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복구청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103호

장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 업 명 : 장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 업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무룡동 276-1번지 일원(176필/82,042㎡)
3.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복구
5. 사 업 기 간 : 2020. 1월 ~ 2021. 12월
6. 사 업 예 산 : 41,431천원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조서 등
 -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전 화 : 052) 241-7582
 - 나. 팩 스 : 052) 241-7569
 - 다. 우 편 : (44248)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복구청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10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광학식디스크(CD)]	비고
일반용지	라벨용지		
46원/매 (A4용지)	218원/매 (A4라벨용지)	(1,000원×디스크개수)+(23원×면수)	

※ 최종 비용의 원단위 절사